
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

2025. 2.

관 계 기 관 합 동

목 차

I. 그간 경과	1
II. 최근 여건 변화	2
III. 가상자산위원회 등 논의내용	4
IV. 정책화 검토 결과: 법인 참여 로드맵	6
1. [1단계]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	6
2. [2단계] 투자·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	8
3. [3단계]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	10
V. 향후 계획	10

I. 그간 경과

- '17.12월, 가상자산 투기 열풍 대응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2차례 범정부 대책* 마련

* 「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(17.12.13일)」, 「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(12.28일)」

- 가상자산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었다는 인식하에 '가상자산 거래소 폐쇄'까지 염두에 두고 강도높은 대응책* 추진

*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실시,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, 사기·환차기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 집중 단속, 가상자산 온라인 광고 제한 등

- 특히, 투기적 가상자산 수요 제어를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**금융회사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 금지**

- 금융 - 가상자산 간 리스크 절연을 위해 **제도권 금융회사**의 가상자산 보유·매입·담보취득·지분투자 일체 금지(행정지도)
- **일반법인**에 대해서도 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사실상 금지(가이드라인*) →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매·현금화 등 차단

※ 「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」(18.1.30일 시행 → '21.12월 종료)

"**법인이 가상자산 거래 주체인 경우**"를 주요 자금세탁 의심거래(STR)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→ 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 사실상 불가

- 다만, 해당 가이드라인 종료('21.12월) 이후에도 정부 규제 기조 등과 맞물려 현재까지 법인 실명계좌 발급 중단 관행 지속

- 지난 7년간 관행이 누적되며, 대내외적으로 '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금지'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고착화
- 이는 국내 가상자산 수요의 해외 이탈,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투자 기피 분위기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

☞ 7년 전과는 달라진 국내외 가상자산 정책 여건을 감안하여, **법인 실명계좌 금지** 등 일률적 규제 기조 재검토 필요

Ⅱ. 최근 여건 변화

◇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흐름, 블록체인 활용도 증대 등과 맞물려 **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필요성 점증**

※ 가상자산 전문가 릴레이 간담회('24.8월~9월) 등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

1 글로벌 규제 움직임 : 해외는 법인 위주로 제도화

□ 美 트럼프 정부 출범('25.1월) 이후 가상자산 정책 구체화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(1.23일) 등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 가속화*

* [예]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CBDC 폐지, 규제·입법 재검토를 위한 워킹그룹 출범,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

○ EU·일본·싱가폴 등 주요국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가상자산 사업자, 스테이블코인 등 규율체계 정비에 박차

□ 이 과정에서 국내 상황과 달리 개인 보다는 '법인'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및 생태계 구축 추진

* [예] 美 최대 코인 거래소 Coinbase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약 80%('22년)

○ 개인의 투자(종목·한도 등)를 일부 규제하는 경우는 있으나, 일반법인의 거래 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(☞ 참고)

※ 현장의 목소리

"개인만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왜곡현상 존재... 기관 참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완화 및 건전화 필요해..."

"해외에서는 현물 ETF 발행 허용과 맞물려 기관 중심의 가상자산 보관·수탁업 활성화... 우리도 매매·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야..."

2 블록체인 기술 활용도 확대 : 가상자산 - 기업 간 연계성 ↑

□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서비스 제공,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한 블록체인·가상자산 분야 사업수요 증가

○ 특히, NFT 발행, 메인넷 구축, 가상자산 지갑, 보안·인증 서비스 등 잠재력이 있는 신생 산업 부문으로 진출 움직임

□ 다만,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은 국내 기업이 관련 사업을 기획·운영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

○ 블록체인 사업 수행(거래수수료, 개발비 등의 수취·지급)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가상자산 취득·처분 불가능

➔ 규제를 피해 미국·싱가폴 등 해외로 자금·인재 유출 가속화

* [예] 국내 상장기업 보유 가상자산은 **약 4천억원**(‘22.6월)인데 비해, 해외 현지 법인의 보유 가상자산은 **약 6.5조원**(‘24년)에 달함(국세청)

※ 현장의 목소리

“국내에서는 NFT 사업을 통해 수반되는 가스비나 판매대금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워 유의미한 사업확장이 힘들어...”

“법인거래 금지 같은 규제 기조로 삼성·LG 등 대기업은 미국 블록체인 기업에 주로 투자... 유능한 인재들도 해외에서 창업을 선호”

3 우리 규율체계 정비 시급 : 2단계 입법의 선결과제

□ ‘24.7월, 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」 시행으로 예치금 보호, 불공정 거래 단속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틀 마련

○ 이어,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「외국환거래법」 개정 등 부처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연관제도 순차 정비 중

□ 향후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율, 거래규제(발행·공시 등),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망라한 2단계 입법이 시급한 시점

➔ 법인 참여는 스테이블코인 규율,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등 글로벌 논의를 따라가기 위한 ‘최소한의 선결과제’

* [스테이블코인]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는 주로 법인(가상자산 거래 등) [현물 ETF] 증권사·자산운용사의 기초자산(가상자산 현물) 매입시 필요

※ 현장의 목소리

“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소위 김치코인으로 ‘먹튀’했던 세력들은 뿌리 뽑고, 시장이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...”

“...이제는 그간 묵혀왔던 법인거래, 현물 ETF 허용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...”

Ⅲ. 가상자산위원회 등 논의내용

- ◇ 그간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제1차 「가상자산위원회 (11.6일)」는 **법인 실명계좌 개설 관련 이슈**를 우선 논의
- ◇ 이후 위원회 논의내용을 기초로, 실무 TF 등을 통해 **세부 추진방안 및 보완장치** 등 정책화 방안 심층 검토

1 가상자산위원회(11.6일) : 단계적·점진적 허용 권고

① 현재 법적으로 법인계좌 발급 제한은 없지만, 오랜 금지 관행이 누적되어 온 만큼 단계적·점진적 허용 방식이 바람직

- 시장 혼선 방지 등을 위해 법인계좌 허용 범위·조건 등에 대해 민관이 함께 모범사례(Best Practice)를 만들어 갈 필요

② 위원들은 그간 법인계좌 수요가 제기됐던 법집행기관, 비영리법인 등을 중심으로 허용 순서, 보완 필요사항 등 논의

① **가상자산 현금화 필요법인** → 거래 양태가 매도로 제한되고 관련 리스크가 낮은 만큼 우선적으로 허용 검토

▲검찰·국세청·지자체 등(몰수·압류한 가상자산 처분) ▲학교·기부단체 등(기부 받은 가상자산 처분) ▲가상자산거래소(수수료 등으로 수취한 가상자산 처분)

- 검찰·국세청·지자체 등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계좌 발급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위원이 동의
- 일부 위원은 비영리법인 리스크 관리강화, 가상자산 거래소-이용자 간 이해상충 방지 등 보완방안 필요성 제기

② **투자·재무 목적의 매매 허용** →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기관 투자자부터 단계적·시범적 허용이 바람직하며,

- 이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장치 보완, 공시 강화, 회계처리 명확화 등 투명성 제고방안 병행 필요

③ 한편, 대부분 위원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·보유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

- 금융-가상자산 부문간 리스크 전이 우려,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논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할 필요

2 가상자산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: 보완장치 등 추가 논의

↳ '24.11월~12월 간 총 12회 개최 → 가상자산위원회 위원, 기재부·금감원, 법집행기관, 대학교, 복지단체, 가상자산거래소, 은행연합회 등 참여

① **(법집행기관)** 몰수·압류한 가상자산 처분 용도의 계좌발급을 위해서는 기관별로 은행 협의가 필요한 불편함 존재

→ 가상자산 이전·처분 관련 법집행을 위한 신속한 협조 요청

② **(비영리법인)** 자금세탁위험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종류, 현금화 방법, 회계지침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보완 필요

- 가상자산 기부·후원 등이 활성화된 해외 대학교·NGO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모범사례 검토

③ **(가상자산거래소)** 불필요한 가상자산 매도 제한을 위해 거래 목적을 운영비 충당(인건비, 세금납부 등)으로 제한할 필요성

- 가상자산 매도시 시장 영향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도절차·방법, 매도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

④ **(투자·재무 목적 거래 허용범위)** 위험감수능력 및 자금세탁방지 역량 등을 고려, 일부 전문투자자(자본시장법)*부터 허용 검토

* 국가, 금융회사, 금융공공기관, 상장기업, 금융투자자잔고 100억원 이상 법인 등

-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 관련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, 상장기업 공시 강화방안 등 강구

IV. 정책화 검토 결과: 법인 참여 로드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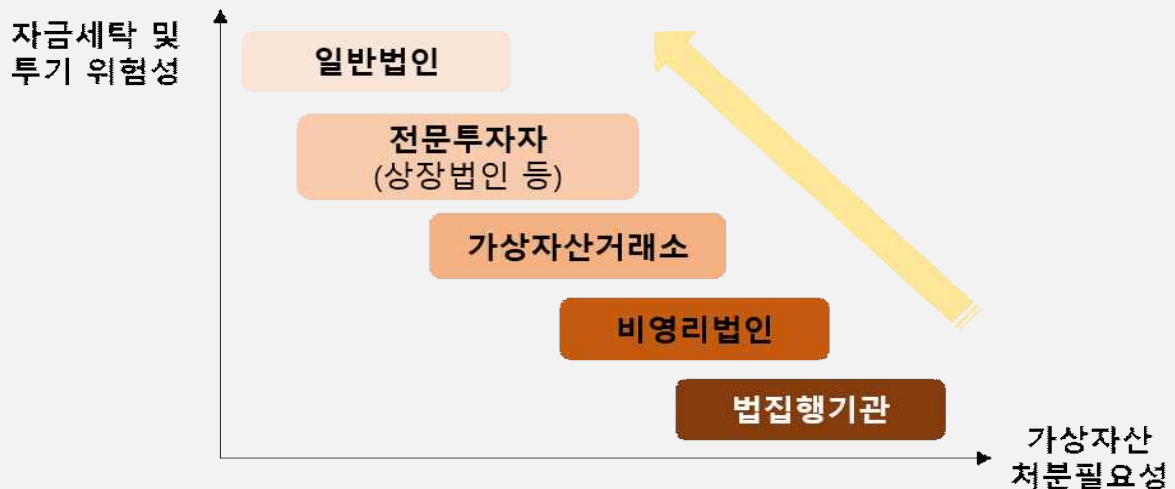
◇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,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·점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

◇ 가상자산 연관성, 관련 리스크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

❶ (1단계) 법집행기관(즉시),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('25.2분기~)에 대해 현금화 목적 법인계좌 개설 우선 허용

❷ (2단계)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(상장법인,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)의 가상자산 매매 허용('25.下~)

❸ (3단계) 일반법인까지 전면 계좌 허용은 추후 외환·세제 등 관련제도 정비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검토



1 [1단계]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

1 법집행기관: 작년 말부터 계좌발급 지원 중

○ (대상) 범죄수익 몰수, 채납재산 강제징수 등 가상자산 이전·매각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

- ▲검찰(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) ▲국세청·관세청(국세징수법 등)
▲지자체(지방세징수법) 등이 해당

* 추후 계좌발급 수요 및 가상자산 이전·매각 절차 마련여부 등에 따라 유관 공공기관(예: 예금보험공사) 등에 대한 추가발급을 검토·협의

⇒ **(추진방향)** '24.11월부터 **법 집행 목적 계좌의 원활한 발급**을 지원 중 → **향후 기관별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**

* 은행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원활한 계좌발급 진행을 위한 신속한 협조 결과,
(‘24.11월: 45개 → ‘25.1월: 202개로 계좌발급 확대(검찰(10개), 국세청(182개) 등)

2 비영리법인 : 내부통제기준 등 마련 후 계좌발급(‘25.2분기~)

○ **(대상)** 지정기부금단체*인 비영리법인, 대학교 학교법인 등

* 주무기관 및 국세청·기재부 등의 지정·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기부시 세제혜택 적용
→ 기부금 모금·활용실적 및 결산서류 공개, 외부 회계감사 등 관리체계 구축(법인세법 시행령)

⇒ **(추진방향)**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**가상자산 수령·현금화 기준·절차** 등이 미비해 처분시점·방법에 따른 불확실성 있는 만큼

- 기부·후원 목적의 **가상자산 수령·처분**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**내부통제기준***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

* 관련 전문가 TF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 공동의 Best Practice 마련 추진

※ **가상자산 기부·후원 관련 내부통제기준** (예시)

- **(절차)** 기부·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·현금화 관련 사전심의위원회 등 통제기구 설치
- **(가상자산 종류·매각)** 유동성·현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종류 제한, 이전받은 가상자산 현금화 시기 및 매각방법 등을 사전 설정

3 가상자산거래소 : 가이드라인 등 마련 후 계좌발급(‘25.2분기~)

○ **(대상)**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·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

○ **(목적 제한)**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(고유재산)을 인건비, 세금 납부 등 **운영비로 활용**하기 위한 매도거래

⇒ **(추진방향)** 거래소의 매도는 ‘자기매매’와 유사해 매매시기·규모 등에 따라 **이용자와 이해상충 발생*** 우려가 있는 만큼,

* (예) 특정 가상자산을 일시에 대량 매도시, 가격 하락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

- **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** 후 순차적으로 계좌발급 추진

※ **공동 가이드라인 주요내용** (예시)

- 가상자산 종류(유동성) 제한, 일간·월간 매도물량 및 자기거래소 매매 제한
- 매매 목적·가격·수량·기간 등에 대해 이용자 사전 공시, 감독당국 보고 등

2 [2단계]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: '25.하반기 이후

□ (대상)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(약 2,500여개사)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* (약 1,000여개사)

*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(외감법인은 50억원) 이상인 법인(자본시장법)
→ 금융투자상품 중 리스크·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 가능

○ 이와 유사하게, 홍콩도 금융투자상품 잔고(800만 HKD↑) 또는 총자산(4천만 HKD↑)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매매 허용

□ (필요성) 가상자산 현금화를 넘어,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·매도 거래부터 시범 허용("Pilot test")

○ 전문성·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통해 개인 중심의 국내 시장 변동성 완화* 및 건전화 도모

* 국내 거래량 변동성('24년, 2~42조원), 알트코인 비중 61.7%(> 글로벌 31.9%)

○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사업(NFT 등) 활성화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재무적 니즈에도 부응

- 특히, 상장기업이 국내외 블록체인·가상자산 연관 기업에 대한 주요 투자자인 측면도 감안 필요

⇒ (추진방향) 광범위한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이 요구되는 만큼,

- 가상자산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후 허용

※ 가상자산 매매 법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 보완방안(예시)

-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이 확인된 경우에만 거래 승인(은행·거래소), 지갑 주소·소유주 검증 등 가상자산 입출고 관리(거래소)
- 해킹, 횡령 방지 등을 위한 제3의 보관·관리기관 활용 권고(은행·거래소)
-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투자자 공시(주석 등) 확대

- 다만, 개별 전문투자자별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, 은행·거래소의 세부 심사를 거쳐 법인계좌 발급 여부 결정

※ 고려사항: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관련

□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(특히, 은행)의 자기자본을 활용한 가상자산 매매·보유에 대해서는 제한하려는 움직임

- 美 연준은 은행의 가상자산 직접 보유 제한('22.1월), 바젤도 은행 보유 암호자산에 최대 1,250% 위험가중치 부과 권고
- 가상자산위원회(11.6일)는 금융-가상자산 간 리스크 전이 등을 우려,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참여에 신중한 접근 권고

□ 최근 금융 분야에서 글로벌 가상자산 논의는 직접 매매 이슈보다 '토큰화(Tokenization)'와 '블록체인 인프라' 구축에 집중

- (토큰화) 채권, 펀드 등 전통적 금융자산을 블록체인(이더리움 등)에서 토큰화하여 유동성·접근성 개선 및 시장 효율성 제고

- (Securitize 사례) KKR, Arca 등 주요 사모펀드(PE)의 LP 지분을 잘게 쪼개 토큰화 → 소액 개인투자자들도 투자 가능, 접근성 확대
- (BlackRock 사례) 주로 美 국채에 투자하는 BUIDL 펀드 출시 → 수익증권 대신 BUIDL token(1달러로 가치 고정) 발행·지급, 국채 유동화 효과

- (블록체인 인프라) '스마트 컨트랙트'를 활용하여 RP 거래, 채권 발행, 신디케이트 론 등 자동화 → 거래의 속도·안전성 향상

- (Goldman Sachs, UBS, SBI 등)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RP 거래 자동화 → 국경간 거래비용 감소, 일 단위가 아닌 몇 시간짜리 RP 거래도 가능
- (UK Finance 사례) 매수주문, 중개기관 청산, 채권토큰 발행 등 채권발행 절차를 블록체인 상에 구현 → 발행시간 및 비용 절감

☞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·보유 이슈는 향후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검토하되,

-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, 금융부문 토큰화 및 블록체인 인프라 접목 등을 우선 지원

- ① (STO 입법 추진)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토큰증권 발행, 자산 유동화 지원
- ② (금융권의 지분투자 탄력성 제고) 핀테크·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주회사 출자제한 완화 등을 추진

3 [3단계]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 : 증장기 검토

- 전문투자자 시범 허용 경과 등을 보아가며, 2단계 입법 및 외환·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전제로 추후 논의

※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의 선결과제 (예시)

- (2단계 입법) 투자권유 등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제,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마련
- (외국환거래법 정비)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구축('26년)
- (CARF 구축) OECD 회원국 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 정보 교환체계 마련(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, '27년)

V. 향후 계획

- ◇ '25.2월 중 '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' 발표 후, 민관이 함께 가이드라인 등 모범사례(Best Practice) 마련

- (2월) 가상자산위원회 최종보고 및 세부방안 발표(2.13일)
 - 금감원, 은행연합회, DAXA, 비영리법인,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 민관 TF 구성 → 법인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착수
- (~상반기)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내부통제기준(은행연 등), 가상자산거래소 매각 공동 가이드라인(DAXA) 마련·발표
- (하반기~) 가상자산 매매 법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·발표(금감원, 은행연)

◇ 개인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일부 투자 제한을 도입한 국가*는 있으나, **법인의 가상자산 활동은 대체로 폭넓게 허용**

* (예시) **캐나다**: 일반투자자는 연말잔고 기준 30,000 CAD 내 투자 허용

<주요국 가상자산 투자 규제 개황>

구 분		미국 ¹⁾	EU	영국	홍콩	일본	싱가폴	캐나다
법인 거래 허용여부		○	○	○	○	○	○	○
개인투자 허용여부	일반투자	○	○	○	△(종목)	○	○	△(한도)
	현물ETF	○	X(ETN)	X	○	X	X	○

1) 뉴욕주와 같이 자체적 규제를 가진 州도 존재

1. 미국 : 법인·개인 관련 별도의 제한 없음

□ (법인) 각 州별 규정 차이는 있으나, 법인(기관투자자 등)의 가상자산 거래 및 금융서비스(지급·결제 등) 제공은 폭넓게 허용

○ 다만, '22년 테라-루나 등 사건 이후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* 강화 추세

* △은행의 암호자산 발행·보유가 건전성과 상충할 가능성(FRB·FDIC·OCC 공동성명, '23.1월)
△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업무 취급시 감독당국 사전보고사항 명시(FRB, '22.8월) 등

□ (개인)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및 연계 상품(가상자산 현물 ETF 등) 투자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

2. 유럽연합(EU) : ETF 발행이 불가하여 투자 불가(ETN은 개인도 가능)

□ (법인)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등을 폭넓게 허용

□ (개인) 투자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,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투자는 불가(가상자산은 EU 공모펀드 적격 자산규정* 불충족)

* (UCITS ; Undertakings for the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)
EU 공통 공모펀드 제도로써 적격자산에 주식·채권·단기금융상품·파생상품 등 포함

○ 다만, 비트코인 현물 ETN*(최초는 '15.5월 스웨덴)은 투자 가능

* (상장지수증권) 기초자산 가격에 연동된 파생결합증권으로, 증권사 신용으로 발행
(독일·프랑스·스페인·이탈리아·스웨덴 등에서 일반투자자도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)

3. 영국 : 개인은 투자대상 제한(파생상품 불가)

□ 전반적으로 EU의 규제수준과 유사하나, '21년 FCA는 가상자산 리스크를 근거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파생상품 판매 금지

○ 기관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현물 ETN 출시는 허용('24.5월)

4. 홍콩 : 개인은 투자대상 제한

※ 중국 정부는 본토에서의 엄격한 가상자산(발행, 거래 등) 금지 정책과 달리, 홍콩을 가상자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 중

□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폭넓게 허용하는 반면,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*

* (법인) 포트폴리오가 800만 HKD(약 15억원) 이상 또는 총자산 4천만 HKD(약 74억원) 이상인 적격 법인투자자에 대해 가상자산 직접·간접투자 허용
(개인) 비트코인,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거래 허용

○ '23.12월, 가상자산 현물 ETF도 아시아 최초로 허용되어 홍콩 거래소 상장('24.4월) → 선·현물 ETF 시장규모 약 1조원 이상

5. 일본 : 법인·개인 관련 별도의 제한 없음

□ 법인·개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, 암호자산교환업자의 가상자산 상장을 자율규제 형태로 엄격히 제한

○ 투자신탁법상 편입자산에 가상자산이 미포함되어 현물 ETF 불가

6. 싱가포르 : 개인은 보호조치 적용

□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폭넓게 허용되는 것에 반해, 개인은 통화청(MAS)의 개인투자자 보호조치* 속에서 허용

* 신용카드 거래금지, 개인투자자 대상 마케팅(에어드랍 등) 금지, 레버리지 거래제공 금지 등

○ ETF의 경우, 싱가포르 내 발행은 금지되나 중개기관을 통해 해외에 상장된 가상자산 ETF에 투자 가능('극도의 주의' 경고)

7. 캐나다 : 개인은 거래한도 제한

□ 암호화폐 거래플랫폼(CTP)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해서 30,000CAD(한화 3천만원, 연말잔고 기준) 한도 내 거래 허용

* 고객 자격(증권법상)에 따라 투자한도 상이(일반: 30,000, 적격: 100,000, 인증: 한도없음)